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8. 31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9. 1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9. 12 (제14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

제1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생활자원과장 조동규)

### 가. 제안사유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(2006. 3. 24)과 관련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설치되는 「긴급지원심의위원회」의 기능수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
-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준칙 변경사항 중 협의체 위원명단 공개규정 마련

### 나. 주요골자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 (안 제2조)
- 협의체위원 명단 공개 : 협의체 위원 위촉 및 임명시 위원명단 공개 (안 제4조의 2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
- 입법예고 : 2006. 9. 4 ~ 9. 25(21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- 기 타 : 조례표준안 시달(시 사회복지과-9686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건은,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2006. 3. 24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주변에서 만성적 생계곤란과 가정폭력, 실직이나 폐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별과 지원규모 등 적절한 심사를 통하여 긴급지원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유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공개함으로써 분야별 대표성 확보와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유도와 참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고 생각됨
- 또한 우리구를 비롯한 각 구·군에서도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
- 긴급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- 위 조례 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     략

6. 토 론    요 지 : 없      음

7. 심 사    결 과 : 원안의결